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달현(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현재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단체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단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청소년단체의 욕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청소년단체의 기관 유형, 규모, 인력, 예산, 운영 등에 대한 기초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전문가협의 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인적, 물적 구성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노력 방안을 모색토록하고,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규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국청소년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현황분석을 위한 조사내용은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황, 협력활동 및 홍보현황, 학교청소년활동 현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내용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화 연락이 가능한 단체 590개를 전수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설문응답 단체는 152개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단체의 기초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운영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청소년사업 수행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둘째, 국가정책 연계활동보다는 단체고유활동에 우선 수행함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동과 정부정책 간에는 괴리감이 있다.

셋째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운영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위탁이 1/3정도로 지속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넷째는 조직구성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보다 9배가 높아 청소년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는 청소년참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은 지도인력 지분이 낮아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일곱째는 보습미가입 청소년활동이 20%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여덟째는 학교 연계프로그램의 경우도 창체활동 등의 연계프로그램은 미흡한 반면에 장학활동이나 수익창출활동은

높다. 아홉째는 홍보활동의 대부분이 사업 중심의 홍보로 지자체의 포괄적인 청소년 관심제고나 여론형성에는 별도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단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이를 위한 표준화 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후기청소년활동센터 설치 및 운영은 학문적 개념과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며, 기초적인 추진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소규모로 일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그 필요성이 미흡하나 광역시도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수행내용에서도 일정수준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강화는 현재 축소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보다는 본원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력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분과나 정책분과는 큰 단체에 일부 위임하여 수행토록하고, 청소년분야에 공통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장 총괄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선필요하다.

-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용어의 배타적 운영권한 도입문제는 차별적 독점으로 경쟁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또는 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확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만한 명칭을 특허 등록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전문가 보유기관만을 대상으로 접근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현재 청소년단체의 활동영역이 국가나 지자체 정책 사업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청소년 사업이나 시설 위탁에서 경제적 기준을 평가 중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

- 학교 에듀팍 인정 단체 활동 확대는 현재 16개 청소년단체 활동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인증제도나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 교사의 단체 활동 참여수당제도 및 승진가산점 제도 확대시행은 교사의 단체활동 기피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여지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단체 참여 학생에 대한 무한책임에 대한 해결이나 승진가산점을 1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문제는 과거의 종사자 복지측면보다는 청소년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며, 우선적으로 공제회 설치를 위한 법적기반확보, 공제회 추진방향 및 목적 설정, 그리고 공제회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공유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 도입문제는 현장의 수요가 존재하고, 기존 청소년지도사와 차별성이 있어야하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인증제와 무엇이 다른가를 고려하여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추진해야하며, 자격증의 수준을 국가자격증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를 논의해야한다.

주제어: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단체운영, 비영리조직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단체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단체 실태를 조사 분석 함
- 청소년단체의 욕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청소년단체 설문내용 구성
-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황, 협력활동 및 홍보현황, 학교청소년활동 현황, 최근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사대상은 152개 청소년단체를 조사하였다.
- 전문가자문 :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현황분석을 위한 조사내용은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황, 협력활동 및 홍보현황, 학교청소년활동 현황, 그리고

3. 주요결과

- 기초현황을 보면 조직구조, 운영현황, 재원구조 등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 보다 사단법인이 더 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산구조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익구조가 회원과 후원금 등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활동을 전개하는데 문제되며, 수익창출에 몰두할 여지가 높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청소년활동 모금회나 청소년활동사업 중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정관내용이나 청소년활동사업 측면에서도 볼 때, 청소년단체는 국가청소년정책과 청소년단체 활동 간에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속단체와 폭넓은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요구됨
- 운영현황에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사업 운영 방식에서 청소년단체의 역량이나 사업의 성격상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외부위탁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은 필요함.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시설위탁 부분에서는 외부위탁 가능부분과 반드시 자신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평가 기준으로 도입 해야함
- 조직구성원의 현황분석 결과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9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 함.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시 위탁법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단체 운영에의 청소년 참여문제는 현재 청소년시설 위탁 등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법인인 청소년단체에는 이러한 조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소년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추후 청소년단체법인의 설립이나 이사회 구성 요건 등에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도인력의 부족 및 지방의 지도자 확보 문제이며,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의 위탁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고 이를 위탁법인의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시 보험미가입 활동이 20%가 된다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매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시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토록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하며, 장기적 조치로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청소년단체 및 시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해야 함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단체 중 재단법인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는 미흡한 반면에 장학활동이나 수익창출활동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음.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연수나 토론회를 통한 교육이나,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

시행에 학교 연계 등을 포함하는 전략도 고려해야함

- 청소년단체의 홍보활동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사업중심의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우호적 역량을 함양시키고 지자체의 청소년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자원인 신문과 방송을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함

4. 정책제언

- 청소년단체 인증제 도입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더불어 그 업무를 위탁할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청소년단체인증제도 시행토록 하는 시행주체와 인증제도 발급 주체, 그리고 인증기간, 그리고 인증제의 지표가 대외적으로 단체신뢰성의 확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대안으로는 표준화된 검증 시스템 구축, 또는 ISO 비영리단체 관련 코드 인증으로 표준 업무를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 제시 필요
- 후기청소년활동센터 설치 및 운영 :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설치는 기초적인 학문연구와 개념적 대상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축적 등이 선행이후야 센터 설립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전에는 경력개발 분야나 자원봉사분야, 해외교류 분야, 근로청소년분야에 대해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운영 :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은 현재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의 연합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미흡한 반면에 지역고유의 단체는 지역협의회가 필요함. 또한 몇몇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단체가 협의회를 형성할 만큼 많지가 않는 것도 현실임. 따라서 광역시·도 단위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단체간의 자생력과 독자적인 성장형태를 볼 때 협력의 필요성이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의도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일정수준의 행정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생성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청소년기본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단체의 비약적인 발달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도 가장 활발하였음. 또한 현재 73개 회원단체를 가진 협의체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황과 문제가 자체 청소년 사업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아짐. 따라서 청소년단체를 대표해서 개별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것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청소년단체인증제’ 등 청소년단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생적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사안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장 총괄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선필요 함

-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용어의 배타적 운영 권한 도입 :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1,00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성이 의문시 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단체만이 차별적 독점을 가짐으로써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현재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증제를 보다 확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단체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만한 명칭을 특허 등록하는 것은 고려 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에 한하여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현재 국가 및 지자체는 위탁사업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단체를 우선선정토록하고 있음.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종류와 역량문제에서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은 과거의 청소년활동 분야를 포함하여 알콜중독예방사업, 금연관련사업, 게임중독사업, 정신건강 관련사업 등 청소년보호나 복지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청소년 사업이나 시설의 위탁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단체를 고려할 때 부담금등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임
- 학교내 에듀팟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 : 현재의 에듀팟 인정 권한이 학교에 있으며, 학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단체의 측면보다는 학교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음. 그리고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청소년단체 인증 제도를 통해 증명된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동시에 인정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청소년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통해 청소년단체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시에는 이에 대한 에듀팟 인정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짐

-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의 참여수당 제도 도입 및 승진가산점 제도의 확대 :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기피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나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5항)’ 선택가산점제 조항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의 경우도 추가로 삽입하여 단체 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프로그램 인증제에 따른 인정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단체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된 청소년단체 활동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유효·적절하게 대처한 교원의 책임 면책(특례법) 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 그리고 승진가산점제도 1점으로 확대 및 적용시점을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2년차로 축소하고, 연간 연수기간도 60시간에서 30시간 축소, 연간 100시간 프로그램 운영을 5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됨
-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 청소년 안전 문제는 국가입장에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기본적 권리의 문제로 보아야할 것임. 따라서 청소년단체 활동 보험가입의무조항을 비롯한 공제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통한 공제회의 목적과 방향, 부담문제를 풀어야함
-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사 제도 도입 : 도입문제는 현장의 수요가 존재하고, 기존 청소년지도사와 차별성이 있어야하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인증제와 무엇이 다른가를 고려하여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추진해야하며, 자격증의 수준을 국가자격증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II. 연구방법	7
1. 조사도구 구성	9
2. 연구대상	10
III. 현황분석결과	11
1. 기초현황	13
2. 운영현황	23
3.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현황	38
4. 청소년단체의 협력 및 홍보활동 현황	51
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 현황	63
6.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 분석	67
IV. 청소년단체 발전 방안	77
1. 문제점	79
2.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81
참 고 문 헌	93
부록(설문지)	97

표 목 차

<표 III-1> 등록관청별 등록 현황	13
<표 III-2> 법인설립 형태	13
<표 III-3> 단체구성원 수	14
<표 III-4> 법인형태별 단체구성원 현황	14
<표 III-5> 단체 자산규모	15
<표 III-6> 법인형태별 자산규모	16
<표 III-7> 법인형태별 청소년단체의 부채비율	17
<표 III-8>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대한 다중응답	18
<표 III-9> 법인형태에 따른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대한 다중응답 ...	19
<표 III-10> 청소년단체의 핵심사업 현황에 대한 다중응답	20
<표 III-11> 법인형태별 청소년단체의 핵심사업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21
<표 III-12> 청소년단체 핵심 사업주체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	22
<표 III-13> 단체운영 방식에 대한 다중응답	22
<표 III-14> 법인형태별 단체 운영방식에 대한 다중응답	23
<표 III-15> 청소년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다중 응답	24
<표 III-16> 법인형태별 청소년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다중 응답	25
<표 III-17> 구성원 현황	26
<표 III-18> 등록관청별 구성원 수	26
<표 III-19> 외부인력 참여현황	27
<표 III-20> 등록관청별 외부인력 참여 현황	27
<표 III-21> 청소년경영 참여(청소년위원회 구성 여부) 현황	28
<표 III-22> 법인형태별 청소년경영 참여 현황	28
<표 III-23> 위탁시설 운영현황	29
<표 III-24> 등록관청별 위탁시설 운영현황	30
<표 III-25> 법인형태별 정규직 평균 연봉(2012년기준)	31

<표 III-26> 청소년단체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2개선택) · 32	32
<표 III-27> 법인형태별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2개선택) ... 33	33
<표 III-28> 단체 연간수입 및 지출 현황(2012년)	34
<표 III-29> 등록관청별 연간수입 현황(2012년)	35
<표 III-30> 법인형태별 연간 지출 현황(2012)	36
<표 III-31> 법인형태별 총수입대비 총지출 비율	36
<표 III-32> 청소년단체의 경영감사 실시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37
<표 III-33> 청소년단체의 경영공개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38
<표 III-34> 대상별 운영프로그램 수	39
<표 III-35> 등록관청별 운영프로그램 수	39
<표 III-36> 프로그램 대상별 참가 인원수	40
<표 III-37>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대상 참가 인원 수	41
<표 III-38>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42
<표 III-39> 등록관청별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43
<표 III-40>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참가(모집) 범위	44
<표 III-41>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참가(모집) 범위	45
<표 III-42> 보험가입 현황	45
<표 III-43>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유무	46
<표 III-44>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수 및 지원 금액	46
<표 III-45> 등록관청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수 및 지원 금액	47
<표 III-46> 프로그램 운영방법 현황	47
<표 III-47>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48
<표 III-48> 법인형태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49
<표 III-49>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50
<표 III-50> 등록관청별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50

<표 III-51> 법인형태별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51
<표 III-52>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사업 운영 현황	52
<표 III-53> 등록관청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프로그램 수 및 연계학교 수	52
<표 III-54> 법인형태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프로그램 수 및 연계학교 수	53
<표 III-55>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연계 현황	54
<표 III-56>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연계 현황	54
<표 III-57> 학교(에듀팍) 인정 단체활동 현황	55
<표 III-58> 등록관청별 학교(에듀팍) 인정 단체활동 현황	56
<표 III-59> 학교외 지역자원연계 사업 활동 현황	56
<표 III-60> 등록관청별 학교외 지역자원연계 사업 활동 현황	57
<표 III-61> 지역자원 연계 사업 추진 실적 현황	58
<표 III-62> 등록관청별 지역자원 연계 사업 추진 실적 현황	58
<표 III-63> 청소년단체 홍보방법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59
<표 III-64> 법인형태별 홍보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59
<표 III-65>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	60
<표 III-66> 법인형태별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	61
<표 III-67>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기관	61
<표 III-68> 등록관청별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기관	62
<표 III-69> 지역내 협력 기관 수	62
<표 III-70> 등록관청별 지역내 협력기관 수	63
<표 III-71>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성별 분포	64
<표 III-72>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교육정도 분포	64
<표 III-73>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외부 직업	65
<표 III-74>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경제력	66
<표 III-7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연령·소속단체 경력	67

<표 III-76> 청소년단체인증제 도입	68
<표 III-77> 후기청소년활동센터 설치	69
<표 III-78>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69
<표 III-7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70
<표 III-80>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배타적 운영 권한	71
<표 III-81> 정부사업 청소년단체 및 전문가만 접근	72
<표 III-82> 학교 에듀팍 인정 청소년 단체 활동 확대	73
<표 III-83> 교사 단체 활동 참여수당 제도 도입	74
<표 III-84> 교사 단체 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 확대	74
<표 III-85> 청소년활동공제회 설치 운영	75
<표 III-86> 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 자격 제도 도입	7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노력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앞장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의 역할수행과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단체의 업무역량도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고 소속된 단체들에 한하여 협의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임의적인 청소년단체에 의한 청소년 활동 추진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예를 들면 국토대장정에서의 성추행 문제 등) 청소년단체 전반에 대한 위축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단체가 시대적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단체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단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단체들의 욕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청소년단체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현재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기관 유형, 규모, 인력, 예산, 운영 등에 대한 기초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추후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청소년단체는 고유의 설립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역역도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본래의 목적은 청소년단체 활동은 아니지만 설립된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의 기능의 일부나 부수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수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정책적으로는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을 통해서 1988년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법인화를 통하여 제도적인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지금까지 청소년현장,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제정,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등 많은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의 청소년단체는 학교의 변화와 청소년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청소년단체의 규모와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위탁사업에 치우침으로써 청소년단체 자체의 고유 활동 영역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제시이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전문가협의 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인적, 물적 구성 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노력 방안을 모색토록하고,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규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최근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인증제’ 도입 방안
- ②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된 19세 이상(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설치 운영 방안
- ③ 청소년단체간 정보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운영 방안
- ④ 현재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⑤ 청소년단체가 아닌 여러 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으로부터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활동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청소년단체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 ⑥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사업 공모에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지도사 등 일정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하는 방안
- ⑦ 학교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에듀팍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 방안
- ⑧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수당제도’ 도입 방안
- ⑨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 확대 시행’ 방안
- ⑩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운영 방안
- ⑪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가칭’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격의 설치 운영 방안

제 2 장



연구방법

1. 조사도구 구성
2. 연구대상

제 2 장 연구방법

1.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설문구성을 위한 문헌연구, 전국청소년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청소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사 기관의 현황조사 내용 중 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기관 조사 자료의 경우 조직관리, 인력관리 및 재정, 프로그램, 지역사회 관계가 포함되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는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적, 입소자의 만족도, 지역사회와의 관계등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조직 및 인력, 수요자,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안전 및 위생 분야로 실시하고 있다

위의 현황조사형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단체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는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이다. 여기에는 등록관청, 법인형태, 구성원, 재산규모, 정관상의 목적, 청소년사업, 사업주체, 단체운영방식 등 8개를 선정하였다.

둘째는 운영현황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사업 운영방식, 구성원 현황, 외부참여현황, 청소년경영 참여 현황, 위탁시설 운영, 인건비, 채용조달방법, 수입 및 지출 현황, 경영감사 및 공개 등 11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셋째는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가 범위, 보험가입,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방법, 지도자 운영 방법 등 8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넷째는 청소년단체의 협력활동 및 홍보 활동 현황으로 여기에는 학교의 창체활동사업 현황, 학교연계활동 현황, 에듀팟 인정활동 현황, 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 주요홍보수단 현황, 외부단체

가입현황, 대외활동 협력현황 등 7개 요인이다.

다섯째는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변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활동경력, 연령, 대외직업, 단체 경력, 경제력 등 7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적 내용으로 청소년단체인 증제, 후기청소년활동센터설치,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강화 방안, 청소년단체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인정,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사업에 대한 접근 제한 기준, 에듀팟 인정 확대, 교사 청소년단체 참여확대를 위한 참여수당제 및 승진가산점제도 확대,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추진,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사를 전문자격화 등 11개 정책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가족부에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전화로 청소년단체로 확인 된 청소년단체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현재 청소년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통화가 가능한 청소년단체 590여개를 1차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청소년단체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한 결과 152개 청소년단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제 3 장

현황분석결과

1. 기초현황
2. 운영현황
3.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현황
4. 청소년단체의 협력 및 홍보활동
현황
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 현황
6.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 분석

제 3 장 현황분석결과

1. 기초현황

조사대상 단체의 기초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단체의 등록관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 단체가 41.9%, 지방정부 등록 단체가 58.1%로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 등록관청별 등록 현황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앙정부	57	41.9	41.9
지방정부	79	58.1	100.0
합계	136	100.0	

둘째로 청소년단체의 법인설립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사단법인 형태가 82.8%이고 재단법인 형태가 17.2%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III-2 법인설립 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단법인	101	66.4	82.8	82.8
재단법인	21	13.8	17.2	100.0
합계	122	80.3	100.0	

셋째로 청소년단체 규모를 회원기준으로 보면 평균 청소년회원이 21,237명, 성인회원이 5,519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1,549명으로 나타나 전체구성원 중 청소년회원이 7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3 단체구성원 수

	N	합계	평균
청소년회원	98	2081285	21237.60
성인회원	112	618173	5519.40
자원봉사자수	82	127096	1549.95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현황은 청소년회원의 경우 사단법인이 18,476명 재단법인이 17,493명으로 사단법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인회원 구성의 경우 사단법인이 4,604명에 비하여 재단법인은 15,462명으로 나타나 재단법인의 경우 성인회원의 참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 법인형태별 단체구성원 현황

법인형태		청소년회원	성인회원	자원봉사자수
사단법인	평균	18476.77	4604.12	1296.78
	N	65	77	55
	합계	1200990	354517	71323
재단법인	평균	17493.87	15462.71	717.38
	N	15	14	13
	합계	262408	216478	9326
합계	평균	18292.48	6274.67	1186.01
	N	80	91	68
	합계	1463398	590995	80649

넷째, 청소년단체의 자산 규모를 평균으로 보면 고정자산이 2768백만원, 유동자산이 1,312백만원으로 고정자산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용성 측면에 볼 때 그 활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부채가 1,521백만원으로 유동자산보다 높아 실제적인 운영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단체 자산규모

	N	합계	평균
고정자산	71	196538	2768.14
유동자산	75	98420	1312.27
부채	43	65439	1521.84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형태별 자산현황을 보면 사단법인에 비하여 재단법인의 자산규모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이 재단법인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단법인이 자산구조가 매우 열악하다.

표 III-6 법인형태별 자산규모

법인형태		고정자산	유동자산	부채
사단법인	평균	1437.08	451.09	693.04
	N	49	53	25
	합계	70417	23908	17326
재단법인	평균	2358.91	475.09	144.75
	N	11	11	8
	합계	25948	5226	1158
합계	평균	1606.08	455.22	560.12
	N	60	64	33
	합계	96365	29134	18484

또한 청소년단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체로 볼 때 31%이다. 법인형태별로는 사단법인의 경우 40%정도 수준이고, 재단법인은 약 7% 수준으로 재단법인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III-7 법인형태별 청소년단체의 부채비율

법인형태		고정자산+유동자산	총자산대비부채비율
사단법인	평균	2215.3235	.4035
	N	34	21
	합계	75321.00	8.47
재단법인	평균	2612.7778	.0674
	N	9	8
	합계	23515.00	.54
합계	평균	2298.5116	.3108
	N	43	29
	합계	98836.00	9.01

다섯째는 정관에 제시된 설립목적에 대한 다중 응답을 보면, 기타청소년활동이 7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육 및 장학활동 59.7%, 수련활동 53.7%, 복지활동 44.3%, 보호활동 36.9%를 선택하였다.

이는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이 여성가족부의 핵심 청소년정책인 청소년활동과 보호를 중심으로 복지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단체는 자체활동을 볼 수 있는 기타청소년활동 비율이 매우 높고, 다음으로 교육과 연계된 장학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많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청소년정책 추진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측면과 더불어 정책부서의 정책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들이 여전히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관 등을 수정하기 보다는 최초 설립시에 제시된 목적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8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종교활동	14	3.3%	9.4%
수련활동	80	19.1%	53.7%
보호활동	55	13.2%	36.9%
복지활동	66	15.8%	44.3%
교육 및 장학활동	89	21.3%	59.7%
기타 청소년활동	114	27.3%	76.5%
합계	418	100.0%	280.5%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형태별로 설립목적을 보면, 사단법인은 기타청소년활동이 81%, 교육 및 장학활동이 67%, 수련활동이 56%이다 이에 비하여 재단법인은 수련활동이 81%, 기타청소년활동이 76.2%, 복지활동이 61.9% 순이다. 수련활동의 경우 재단법인이 사단법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

또한 특이한 결과로는 재단법인의 경우 종교활동이 23.8%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종교기관이거나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9 법인형태에 따른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법인형태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활동	총계	9	5	14
	%	9.0%	23.8%	
수련활동	총계	56	17	73
	%	56.0%	81.0%	
보호활동	총계	35	7	42
	%	35.0%	33.3%	
복지활동	총계	46	13	59
	%	46.0%	61.9%	
교육 및 장학활동	총계	67	12	79
	%	67.0%	57.1%	
기타 청소년활동	총계	81	16	97
	%	81.0%	76.2%	
합계	총계	100	21	121

청소년단체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다중응답결과는 <표III-10>에서와 같이 기타청소년활동 48.6%, 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위의 정관상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내용과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단체와 함께 공유할 필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공립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함으로 과거의 정책동반자인 사회단체인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III-10 청소년단체의 핵심사업 현황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수련활동사업	58	20.7%	39.7%
보호활동사업	28	10.0%	19.2%
복지활동사업	25	8.9%	17.1%
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63	22.5%	43.2%
자원봉사활동	35	12.5%	24.0%
기타 청소년관련활동	71	25.4%	48.6%
합계	280	100.0%	191.8%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형태별 핵심 청소년사업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의 경우는 기타청소년관련 활동사업과 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보호활동 사업에서 재단법인 비하여 활동사업이 높은 편이며, 재단법인은 수련활동사업, 복지활동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에서 사단법인보다 활동사업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기타청소년관련활동사업, 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수련활동사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법인형태별 청소년단체의 핵심사업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구 분		법인형태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수련활동사업	총계	35	14	49
	%	35.7%	66.7%	
보호활동사업	총계	20	3	23
	%	20.4%	14.3%	
복지활동사업	총계	17	5	22
	%	17.3%	23.8%	
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총계	48	5	53
	%	49.0%	23.8%	
자원봉사활동	총계	21	6	27
	%	21.4%	28.6%	
기타 청소년관련활동	총계	46	9	55
	%	46.9%	42.9%	
합계	총계	98	21	119

청소년단체 사업시 핵심사업주체에 대한 다중응답결과는 <표 III-12>와 같이 회원과 소속법인이 각각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12.2%, 오너(대표자)가 9.5%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가 회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단체가 소속된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청소년사업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소속법인의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속법인이 청소년전문단체가 아닌 경우 청소년분야에 대한 활동 영역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소속법인의 성격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표 III-12 청소년단체 핵심 사업주체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종교단체	3	1.8%	2.0%
오너(대표자)	14	8.6%	9.5%
정부 및 지자체	18	11.0%	12.2%
소속법인	60	36.8%	40.8%
회원	60	36.8%	40.8%
기타	8	4.9%	5.4%
합계	163	100.0%	110.9%

청소년단체 운영 방식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소속법인이 직접운영이 60.8%로 가장 높게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의체를 통한 운영 24.3%, 대표자 직영 선택이 10.1%이다.

표 III-13 단체운영 방식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협의체를 통한 운영	36	23.2%	24.3%
전문운영자에 의한 운영	4	2.6%	2.7%
대표자 직영	15	9.7%	10.1%
소속법인이 직접 운영	90	58.1%	60.8%
기타	10	6.5%	6.8%
합 계	155	100.0%	104.7%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형태별 단체 운영방식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사단법인은 소속법인

직접운영과 협의체를 통한 운영이 높은 반면에 재단법인은 소속법인이 직접운영과 대표자직영 및 협의체를 통한 운영으로 나타났다. 전문 운영자에 의한 운영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재단법인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 운영은 대부분 소속법인이 직접운영 하거나 협의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법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소년 사업 및 영역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는 소속법인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표 III-14 법인형태별 단체 운영방식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단체운영방식					합계
		협의체를 통한 운영	전문운영자에 의한 운영	대표자 직영	소속법인이 직접운영	기타	
사단법인	총계	21	3	6	72	4	100
	%	87.5%	100.0%	66.7%	82.8%	100.0%	
재단법인	총계	3	0	3	15	0	21
	%	12.5%	0.0%	33.3%	17.2%	0.0%	
합계	총계	24	3	9	87	4	121

2. 운영현황

청소년단체의 운영현황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관련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력현황, 외부참여, 자원조달방법, 연간 수입 및 지출 등 조직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먼저, 청소년사업에 대한 주요 운영방식의 선정에 관한 다중응답 결과는 <표III-1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운영이 64.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이 23%. 기관 및 단체가 연합 운영 22.3%이며, 위탁운영은 14.2%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위탁운영 병행과 위탁운영 부분이다. 최근 청소년활동 관련 사고의 대부분이 위탁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역량이 부족한 위탁업체에 청소년 사업을 위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직영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위탁운영 자체를 막기보다는 위탁운영시 요구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청소년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다중 응답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위탁운영	21	10.9%	14.2%
직접운영	96	50.0%	64.9%
직접 및 위탁운영 병행	34	17.7%	23.0%
기관 및 단체 연합운영	33	17.2%	22.3%
기타	8	4.2%	5.4%
합 계	192	100.0%	129.7%

보다 구체적인 현황분석에서 법인형태별 청소년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를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직영 - 연합운영 - 위탁 및 직영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단법인은 위탁운영 - 위탁 및 직영 - 연합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이 많은 재단법인의 경우 직접사업 추진 역량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의 역량에 상관없거나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문제는 특히 위험을 동반하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청소년사업 위탁이 법인에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요구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탁사업기관의 재무적 역량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체로 선정되고, 그 결과 위탁업체는 그 사업을 재위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 III-16 법인형태별 청소년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다중 응답

구 분		청소년사업 운영방식					합계
		위탁	직영	위탁 및 직영	연합운영	기타	
사단법인	총계	9	72	18	20	6	101
	%	50.0%	90.0%	69.2%	71.4%	85.7%	
재단법인	총계	9	8	8	8	1	20
	%	50.0%	10.0%	30.8%	28.6%	14.3%	
합 계	총계	18	80	26	28	7	121

운영현황의 둘째는 조직구성원의 현황이다. 현재 청소년단체의 구성원 현황을 보면 총직원수가 평균 17.5명이며, 이중 정규직원은 12.3명, 비정규직원은 113.3명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가 각종사업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인력에 비하여 정규직원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가 각종 청소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매우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각종 청소년활동 관련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현실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운영체계는 각종 비용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표 III-17 구성원 현황

	N	합계	평균
총직원수	141	2466	17.49
정규직원수	123	1510	12.28
비정규직원수	88	9972	113.32

세부적으로 청소년단체 등록 관청별 직원 현황을 분석해보면<표III-18>에서와 같이 지방정부 등록 단체의 경우 평균 인력규모도 낮고 정규직원수도 8명이고 비정규직원 수도 5명으로 소규모 인 반면에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경우 총직원수가 27.5명 정규직원이 19.2명이고 비정규직원 수도 333명이나 된다. 즉, 중앙정부 등록 청소년단체가 비정규직원을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도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등록 단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III-18 등록관청별 구성원 수

등록관청등록처		총직원수	정규직원수	비정규직원수
중앙정부	평균	27.49	19.23	333.66
	N	55	47	29
	합계	1512	904	9676
지방정부	평균	11.36	8.06	5.19
	N	72	66	53
	합계	818	532	275
합계	평균	18.35	12.71	121.35
	N	127	113	82
	합계	2330	1436	9951

셋째는 청소년단체 운영에 외부인력의 참여 정도이다. 이는 오너의 전횡을 막고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Ⅲ-19>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는 이사진이 평균 21.3명, 자문위원이 15.4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운영에의 참여보다는 사업측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9 외부인력 참여현황

	N	합계	평균
이사진수	120	2561	21.34
자문회원수	89	1370	15.39
교직원 참여수	68	78130	1148.97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단체별 외부인력 참여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많은 참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지방의 청소년관련 전문인력풀의 한계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0 등록관청별 외부인력 참여 현황

등록관청등록처		이사진수	자문회원수	교직원참여수
중앙정부	평균	36.29	23.08	2116.25
	N	49	37	36
	합계	1778	854	76185
지방정부	평균	9.95	9.74	39.36
	N	60	43	25
	합계	597	419	984
합계	평균	21.79	15.91	1265.07
	N	109	80	61
	합계	2375	1273	77169

넷째는 청소년단체 경영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훈련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의 경영참여 관련위원회가 있는 것은 43.5%이고, 없다가 55.1%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권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에서는 이정도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경영참여 청소년의 역할수준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1 청소년경영 참여(청소년위원회 구성 여부) 현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64	42.1	43.5
없다	81	53.3	55.1
무응답	2	1.3	1.4
합계	147	96.7	100.0

세부적으로 법인형태에 따른 청소년 경영참여 현황은 재단법인이 71.4%로 사단법인의 42.4%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법인형태별 청소년경영 참여 현황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다	빈도	42	15	57
	%	42.4%	71.4%	47.5%
없다	빈도	57	6	62
	%	57.6%	28.6%	52.5%
합계	빈도	99	21	120
	%	100.0%	100.0%	100.0%

다섯째는 청소년단체의 위탁시설 운영 현황이다. 이는 현재 청소년단체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단체의 위탁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평균 3.64개의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며, 기타시설은 2.28개소 위탁을 받고 있다.

표 III-23 **위탁시설 운영현황**

		청소년시설 위탁	기타시설위탁
N	유효	39	16
	결측	113	136
평균		3.64	2.28
합계		142	37

중앙정부 등록 청소년단체는 평균 청소년시설 5.33개와 기타시설 2.38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록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시설 2.74개, 기타시설 2.28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쉼터, 상담실, 자립센터등 다양한 형태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단체의 대부분은 수련활동측면에 집중함으로서 다른 분야에 대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4 등록관청별 위탁시설 운영현황

구 분		청소년시설 위탁	기타시설위탁
중앙정부	평균	5.33	2.38
	N	15	12
	합계	80	29
지방정부	평균	2.74	2.00
	N	19	4
	합계	52	8
합계	평균	3.88	2.28
	N	34	16
	합계	132	37

여섯째는 직원들의 연봉이다. 전체적으로 조사에 응답에서 간부직원과 임원의 연봉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법인에서 무급여 또는 실비수준의 급여만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교법인의 경우 무급형태가 많고, 재단법인의 경우도 오너가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임원들도 대부분 비상근에 자원봉사측면이 높아 급여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5 법인형태별 정규직 평균 연봉(2012년기준)

법인형태		최하직원	간부직원	임원
사단법인	평균	91.40	34.45	19.91
	N	65	50	16
	합계	5941	1723	319
재단법인	평균	13.16	50.77	35.20
	N	19	14	5
	합계	250	711	176
합계	평균	73.70	38.02	23.55
	N	84	64	21
	합계	6191	2433	495

일곱째는 청소년단체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청소년단체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표 III-26>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후원금이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원회비가 58.6%, 수익(임대)사업 수익이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의 운영유지가 자체경제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대부분 후원금과 회원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로써 제대로 된 단체운영을 위한 재원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6 청소년단체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2개선택)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법인전입금	24	9.4%	17.1%
회원회비	82	32.3%	58.6%
후원금	91	35.8%	65.0%
오너지원	21	8.3%	15.0%
수익(임대포함) 사업 수입	36	14.2%	25.7%
합계	254	100.0%	181.4%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법인형태에 따른 다중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후원금과 회원회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재단법인의 경우는 후원금과 수익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단법인이 단체사업의 추진체계가 외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재단법인의 경우는 외부지원과 더불어 자체수익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사단법인의 운영체계가 보다 개방적으로 외부지향적인 활동을 강화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재단법인의 경우는 운영체계가 이사회 활동이나 자체수익사업 창출 등 내부지향적인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청소년단체 활동의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한다면 사단법인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7 법인형태별 자원조달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2개선택)

		자원조달방법					합계
		법인 전입금	회원 회비	후원금	오너 지원	수익사업	
사단법인	총계	16	61	62	14	20	96
	%	72.7%	89.7%	84.9%	87.5%	64.5%	
재단법인	총계	6	7	11	2	11	19
	%	27.3%	10.3%	15.1%	12.5%	35.5%	
총계		22	68	73	16	31	115

여덟째는 연간 수입 및 지출현황이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경영 전반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청소년단체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 청소년단체의 경영현황은 <표 III-28>, <표 III-29>, <표 III-30>, <표 III-31>에서와 같다.

<표 III-28>에서 제시된 청소년단체의 전반적인 연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평균으로 보면 총수입이 1,865백만원, 총지출이 3,63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수입의 경우 평균으로 볼 때, 사업외 수입과 사업수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회비, 후원금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출의 경우는 사업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의 외부의존적 자원구조로 인해 단체의 중심활동이 수익창출에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28 단체 연간수입 및 지출 현황(2012년)

	N	합계	평균
법인전입금	36	8891	246.97
회비	60	24783	413.04
후원	63	24367	386.77
임대수입	12	3425	285.38
국고및 지방비	52	25255	485.67
사업수익	45	40441	898.69
사업외수입	38	45589	1199.72
총수입	77	143640	1865.46
인건비	81	85424	1054.61
사업비	83	140054	1687.40
관리비	77	15778	204.91
기타비용	49	13485	275.20
총지출	89	323188	3631.32

수입구조에 대한 청소년단체 등록 관청별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경우에서도 사업외 수입과 사업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록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방정부 등록단체의 경우 법인전입금이 총수입대비 39.5%를 차지한 반면에 중앙정부 등록단체는 1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지방정부 단체의 사회적 투자가 중앙정부 단체보다 좀더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III-29 등록관청별 연간수입 현황(2012년)

		법인전 입금	회비	후원	임대 수입	국고및 지방비	사업 수익	사업외 수입	총수입
중앙 정부	평균	215.71	503.65	441.78	349.93	223.67	1201.15	1282.32	1996.54
	N	14	31	30	7	23	20	22	35
	합계	3020	15613	13254	2450	5145	24023	28211	69879
지방 정부	평균	228.26	76.07	63.96	39.67	161.35	393.68	465.30	577.67
	N	19	23	27	3	26	21	14	38
	합계	4337	1750	1727	119	4195	8267	6514	21951
합계	평균	222.94	321.53	262.82	256.85	190.61	787.57	964.59	1257.95
	N	33	54	57	10	49	41	36	73
	합계	7357	17363	14981	2569	9340	32290	34725	91830

또한 연간 지출 현황을 법인형태별로 볼 때 인건비와 사업비가 모두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총지출에서 사단법인은 평균 4,925백만원이나 재단법인은 1,992백만원으로 나타나 사단법인이 청소년활동사업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0 법인형태별 연간 지출 현황(2012)

법인형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기타비용	총지출
사단법인	평균	1171.14	2274.78	207.67	147.08	4925.53
	N	57	57	55	35	57
	합계	66755	129662	11422	5148	280755
재단법인	평균	594.79	760.08	380.18	368.11	1992.77
	N	14	13	11	9	13
	합계	8327	9881	4182	3313	25906
합계	평균	1057.50	1993.48	236.42	192.29	4380.87
	N	71	70	66	44	70
	합계	75082	139543	15604	8461	306661

총수입대비 총지출 비율을 대해 법인형태별로 보면 <표 III-31>에서와 같다.

사단법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117.9%로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구조인 반면에 재단법인은 94.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단법인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의 표에서 본바와 같이 재단법인이 청소년사업 보다는 사업외 수익창출에 모두 집중함으로써 청소년사업의 확대 측면에서는 그 투자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1 법인형태별 총수입대비 총지출 비율

법인형태	평균	N	합계
사단법인	117.9291	45	5306.81
재단법인	94.9365	11	1044.30
합계	113.4127	56	6351.11

아홉째는 경영감사 및 경영공개로써 이는 청소년단체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회원의 회비나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단체의 경우는 더욱 경영감사와 경영공개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영감사 실시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대부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의 경우는 43.8%에 불과한 것은 최근의 사회적 욕구와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표 III-32 청소년단체의 경영감사 실시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외부감사	64	34.4%	43.8%
자체감사	115	61.8%	78.8%
미실시	7	3.8%	4.8%
합계	186	100.0%	127.4%

아울러 경영공개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에서도 자체공개는 75.7%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외부공개 41% 수준에 머물르고 있어 청소년단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감사나 외부공개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표 III-33 청소년단체의 경영공개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외부 공개	59	33.5%	41.0%
자체공개	109	61.9%	75.7%
비공개	8	4.5%	5.6%
합계	176	100.0%	122.2%

3.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단체 활동의 실제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단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청소년단체로서의 역할의 수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 모집 범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방법,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운용 방법 등이 있다.

첫째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표 III-34>와 같다.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평균 청소년대상 67.6개, 성인대상 25.1개, 어린이 및 유아대상 19.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4 대상별 운영프로그램 수

	N	합계	평균
청소년대상	139	9397	67.60
어린이및 유아대상	36	699	19.42
성인대상	79	1984	25.11
기타	23	130	5.65

보다 구체적으로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보면 중앙정부 등록 단체의 경우는 청소년대상이 124.7개, 성인대상이 45.3개, 어린이 및 유아대상이 19.4개이며,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청소년 대상이 33.7개, 어린이 및 유아대상이 13.4개, 성인대상이 7.8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활동 역량이나 규모는 중앙정부 등록 단체가 높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다음으로 성인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에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활동 역량과 규모도 작은 편이고, 청소년 다음으로 어린이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등록관청별 운영프로그램 수

등록관청등록처		청소년대상	어린이및 유아대상	성인대상	기타
중앙정부	평균	124.67	19.43	45.36	2.42
	N	54	14	33	12
	합계	6732	272	1497	29
지방정부	평균	33.69	13.41	7.85	4.88
	N	70	17	39	8
	합계	2358	228	306	39
합계	평균	73.31	16.13	25.04	3.40
	N	124	31	72	20
	합계	9090	500	1803	68

둘째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인원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이 17,010명으로 전체 참가인원 중 5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인의 참가가 30.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청소년단체의 활동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전문단체의 프로그램 활동 참가 인원이 청소년의 규모가 70%에 미치지 못한 것은 학교활동 등에 따른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단체가 수익창출에 얽매이고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표 III-36 프로그램 대상별 참가 인원수

	N	합계	평균
청소년	136	2313364	17010.03
어린이 및 유아	44	165326	3757.41
성인	88	819622	9313.89

보다 세부적으로 청소년단체의 등록관청별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경우 청소년 참가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청소년의 참가가 43.5%에 불과하다. 즉, 지방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 참가가 더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방청소년단체의 활동 정체성을 보다 청소년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I-37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대상 참가 인원 수

등록관청등록처		청소년	어린이 및 유아	성인
중앙정부	평균	24857.45	2745.00	5029.71
	N	53	19	41
	합계	1317445	52155	206218
지방정부	평균	13543.84	2677.16	14854.33
	N	68	19	40
	합계	920981	50866	594173
합계	평균	18499.39	2711.08	9881.37
	N	121	38	81
	합계	2238426	103021	800391

셋째는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이다. 이는 최근의 청소년사고가 대부분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련활동이나 캠프활동의 대분이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청소년단체의 전체 프로그램 수는 평균적으로 볼 때 29.6개정도이고, 참가인원은 5,574명, 지도인력은 6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개별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참가인원은 188.3명이고, 참가지도자 수는 20.8명이되고, 참가지도자 1명당 약 9.05명정도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참가지도자에 대한 산정이 순수지도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 전반적인 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III-38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N	합계	평균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수	107	3166	29.59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92	512863	5574.60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참가지도사	92	56910	618.59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등록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프로그램 수는 58.4개, 참가인원은 10,079명, 참여 지도자는 1,329명으로 지도인력 1인당 7.6명인데 비하며,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프로그램 수가 7.2개, 참가인원은 1,499명, 참여 지도자는 27명으로 지도인력 1인당 55.5명으로 인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청소년단체의 역량측면으로만 보기 보다는 현재 청소년지도인력이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고, 젊은 지도인력은 지방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보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고 보여 진다.

표 III-39 등록관청별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록관청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수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 참가지도사
중앙정부	평균	58.38	10079.40	1329.02
	N	45	42	41
	합계	2627	423335	54490
지방정부	평균	7.22	1499.70	27.21
	N	50	40	42
	합계	361	59988	1143
합계	평균	31.45	5894.18	670.28
	N	95	82	83
	합계	2988	483323	55633

넷째는 청소년단체의 활동 영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범위이다. 즉, 청소년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 할 수 있고, 추후 청소년활동 사업 선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표 III-40>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4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소속지자체가 28.2%이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 소속 청소년단체가 42%라고 볼 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40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참가(모집) 범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국	63	41.4	44.4	44.4
광역 시도	31	20.4	21.8	66.2
소속 지자체	40	26.3	28.2	94.4
2개이상 지자체	8	5.3	5.6	100.0
합계	142	93.4	100.0	

보다 구체적으로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들의 프로그램 참가 모집 범위를 보면 전국대상은 중앙정부 등록 단체가 63.8%, 지방정부 등록단체가 36.2%로 지방정부 등록단체도 전국대상 프로그램 참가모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지역의 청소년인원의 저하와 더불어 지역청소년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위탁시에서는 참가범위를 전국단위로 연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Ⅲ-41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참가(모집) 범위

구 분		등록관청		전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국	빈도	37	21	58
	%	63.8%	36.2%	100.0%
광역시도	빈도	9	17	26
	%	34.6%	65.4%	100.0%
소속지자체	빈도	7	28	35
	%	20.0%	80.0%	100.0%
2개이상 지자체	빈도	2	6	8
	%	25.0%	75.0%	100.0%
전 체	빈도	55	72	127
	%	43.3%	56.7%	100.0%

다섯째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활동시에 보험가입 여부로 가입단체가 79.9%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나, 미가입단체도 20.1%가 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서만 보험가입을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의무조항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를 추진해야한다.

표 Ⅲ-42 보험가입 현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입	111	73.0	79.9	79.9
미가입	28	18.4	20.1	100.0
합계	139	91.4	100.0	

여섯째, 청소년단체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이다.

<표 III-43>에서 청소년단체의 72.3%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정부나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3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38	25.0	27.7	27.7
있음	99	65.1	72.3	100.0
합계	137	90.1	100.0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의 수와 지원 금액을 보면, 평균 7.5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80,24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수 및 지원 금액

	N	합계	평균
지원프로그램 수	96	724	7.54
지원금액	81	6,499,877	80,245.39

보다 구체적으로 등록관청별로 지원프로그램 수와 지원 금액은 보면 <표 III-45>에서와 같이 중앙정부 등록 단체의 경우 평균 8.42개의 프로그램과 119,20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1개 프로그램에 평균 14,158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 등록 단체의 경우는 평균 6개의 프로그램과 40,079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프로그램에 평균 약6,680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등록단체가 지방정부에 비해 2.11배 정도 더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등록관청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수 및 지원 금액**

등록관청등록처		지원프로그램수	지원금액
중앙정부	평균	8.42	119,208.18
	N	36	33
	합계	303	3,933,870
지방정부	평균	6.00	40,079.73
	N	48	42
	합계	288	1,683,349
합계	평균	7.04	74,896.25
	N	84	75
	합계	591	5,617,219

일곱째는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단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표 III-46>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100% 자체운영이 82.8%인 반면에 일부 외부위탁 운영 프로그램도 17.2%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청소년단체가 자신의 들의 프로그램 수행 능력 이상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청소년 참가 인원의 안전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의 현실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기준과 조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6 **프로그램 운영방법 현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00%자체운영	120	78.9	82.8	82.8
일부외부위탁운영	25	16.4	17.2	100.0
합계	145	95.4	100.0	

구체적으로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보면 100%자체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록 단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외부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 등록단체의 운영규모의 영세함과 역량의 미흡함과 더불어 외부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지역단체로서의 한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47 등록관청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록관청등록처		전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100%자체운영	빈도	47	64	111
	%	42.3%	57.7%	100.0%
일부외부 위탁운영	빈도	7	12	19
	%	36.8%	63.2%	100.0%
합 계	빈도	54	76	130
	%	41.5%	58.5%	100.0%

법인형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100% 자체운영비율이 높은 반면에 재단법인의 경우 전체프로그램의 35%정도를 일부 외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재단법인의 역량측면보다는 재단법인이 운영 측면에서 인력충원 등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48 법인형태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100%자체운영	빈도	85	13	98
	%	86.7%	13.3%	100.0%
일부외부위탁운영	빈도	12	7	19
	%	63.2%	36.8%	100.0%
합계	빈도	97	20	117
	%	82.9%	17.1%	100.0%

여덟째는 청소년단체 활동시에 지도자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다중 응답이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요인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표 III-49>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는 100% 자체직원 운용이 61.4%, 자원봉사자 54.5%, 외부지도자 임시채용 24.1%,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9.7%, 전문사업단체 5.5%이다. 이 결과에서 전문사업단체를 제외한 다른 응답은 청소년단체가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질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전문사업단체 위탁 운영은 해당 청소년단체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곧 참가 청소년에 대한 질 관리,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유발 할 수가 있다.

표 III-49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100% 자체직원	89	39.6%	61.4%
외부지도자 임시채용	35	15.6%	24.1%
아르바이트 대학생	14	6.2%	9.7%
자원봉사자 활용	79	35.1%	54.5%
기타 전문사업단체 계약 활용	8	3.6%	5.5%
합계	225	100.0%	155.2%

이를 <표 III-50>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표 III-51>의 법인형태별로 지도자 운영방법에 대한 다중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록단체 모두는 100% 자체인력 활용과 자원봉사자 활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외부인력 임시채용에서는 지방정부 등록단체가 중앙정부 등록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등록관청별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100% 자체직원	외부지도자 임시채용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타전문사업단체계약	계
중앙정부	총계	39	11	6	28	3	54
	%	48.1%	36.7%	42.9%	41.8%	60.0%	
지방정부	총계	42	19	8	39	2	76
	%	51.9%	63.3%	57.1%	58.2%	40.0%	
총계		81	30	14	67	5	130

법인형태에서는 유사하게 100% 자체인력이용과 자원봉사 활용 순으로 높은 반면에 외부지도자 임시채용에서는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에 비해 높다.

표 III-51 법인형태별 단체활동시 지도자운용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100% 자체직원	외부지도자 임시채용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타전문사업단체계약	계
사단법인	총계	57	26	10	54	5	96
	%	78.1%	86.7%	83.3%	84.4%	83.3%	
재단법인	총계	16	4	2	10	1	21
	%	21.9%	13.3%	16.7%	15.6%	16.7%	
합 계	총계	73	30	12	64	6	117

4. 청소년단체의 협력 및 홍보활동 현황

청소년단체의 협력 활동과 홍보활동은 청소년 활동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단체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교중심활동과, 지역활동, 그리고 홍보방법등이 있다.

첫째는 현재 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사업은 <표 III-52>에서와 같이 연간 청소년단체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는 평균 22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고 있는 학교는 99개로 나타났다.

표 III-52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사업 운영 현황

	N	합계	평균
창체 운영 프로그램 수	79	1,738	22.00
창체 연계학교 수	58	5,759	99.29

등록관청별로 볼 때 중앙정부등록 단체는 평균 50개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 학교 수도 224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평균4.3개의 프로그램과 9.3개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등록 단체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정부 등록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학교 수의 축소와 더불어 지방정부 등록단체의 창의적 체험활동 추진 역량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체활동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활동이 요구된다

표 III-53 등록관청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프로그램 수 및 연계학교 수

구 분		창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창체 연계 학교 수
중앙정부	평균	50.00	224.33
	N	30	24
	합계	1500	5384
지방정부	평균	4.29	9.32
	N	42	28
	합계	180	261
합계	평균	23.33	108.56
	N	72	52
	합계	1680	5645

세부적으로 법인형태별로는 사단법인은 평균 29개의 프로그램과 132개 학교와 연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6.54개의 프로그램과 17개 학교와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단법인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활동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학교를 활동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특성도 외부지향적인 활동이 높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보다는 자체의 설립목적이나 수익창출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동이 높기 때문에 창체활동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54 법인형태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프로그램 수 및 연계학교 수

법인형태		창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창체 연계 학교 수
사단법인	평균	28.96	132.87
	N	53	39
	합계	1535	5182
재단법인	평균	6.54	17.09
	N	13	11
	합계	85	188
합계	평균	24.55	107.40
	N	66	50
	합계	1620	5370

둘째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학교 연계현황으로 이는 청소년단체의 활동기반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요소가 된다.

청소년단체 활동과 연계학교는 평균 321개 학교이며, 단체활동 참여 교사는 1,14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연계 현황

	N	합계	평균
단체활동 연계학교 수	80	25907	321.34
단체활동 참여교사	77	87935	1142.01

등록관청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학교 연계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경우는 연계학교 수가 713개, 참여교사는 2432명인 반면에 지방정부 등록단체는 25.6개 학교와 연계하고, 187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 등록단체의 지역적 한계와 더불어 학교나 교사와의 연계 필요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학교의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하는 단체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단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의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포함토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표 III-56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연계 현황

등록관청		단체활동 연계학교 수	단체활동 참여교사
중앙정부	평균	713.00	2432.91
	N	34	33
	합계	24242	80286
지방정부	평균	25.61	187.16
	N	38	37
	합계	973	6925
합계	평균	350.21	1245.87
	N	72	70
	합계	25215	87211

셋째는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청소년에 대한 교과부의 에듀팟 인정이다. 에듀팟이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교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과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추후 입학사정관제나 취업등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에듀팟 인정 활동의 기본은 학교 교장에 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단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에듀팟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듀팟 인정문제는 추후 청소년단체의 유지 발전 측면에서도 단체활동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III-57>의 학교 에듀팟 인정 단체활동 현황을 보면 평균 91개 단체활동에 대해서 인정된 활동으로 기록된 반면에 미인정 활동도 3.9개에 이른다.

표 III-57 학교(에듀팟) 인정 단체활동 현황

	N	합계	평균
인정된활동	37	3379	91.32
미인정활동	23	90	3.91

구체적으로 등록관청에 따른 학교 인정 단체활동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 단체는 인정활동이 266.9개, 미인정활동이 4.9개인 반면에 지방정부 등록 단체는 평균 인정된 활동이 5.53개, 미인정활동이 2.58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정부에 등록된 지역중심 단체의 경우 앞의 표에서 학교와의 연계 수준과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것과 동일하게 학교의 에듀팟 인정 활동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등록 단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근간이 청소년에게 있음을 볼 때 지역중심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단체활동 경력을 기록 및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표 III-58 등록관청별 학교(에듀팍) 인정 단체활동 현황

등록관청		인정된활동	미인정활동
중앙정부	평균	266.92	4.89
	N	12	9
	합계	3203	44
지방정부	평균	5.53	2.58
	N	19	12
	합계	105	31
합계	평균	106.71	3.57
	N	31	21
	합계	3308	75

넷째는 청소년단체가 학교외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사업활동 현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반이 지역사회라고 볼 때, 지역자원과의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표 III-59>에서 제시되었듯이 청소년단체의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55%정도 있는 반면에 45%정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활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관심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

표 III-59 학교외 지역자원연계 사업 활동 현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음	49	32.2	45.0
있음	60	39.5	55.0
합계	109	71.7	100.0

보다 구체적으로 등록관청별 지역자원 연계 사업활동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등록단체보다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들이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활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지역청소년단체가 지역 자원들과의 연계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단체 활동 사업이 지역 자원들과의 연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가능 한 것들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의 청소년활동 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지역민들에게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 단체활동의 방향이 소극적인 정관상의 목적실천 등을 넘어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청소년활동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표 III-60 **등록관청별 학교의 지역자원연계 사업 활동 현황**

구 분		등록관청등록처		전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없음	빈도	16	28	44
	%	36.4%	63.6%	100.0%
있음	빈도	26	29	55
	%	47.3%	52.7%	100.0%
전 체	빈도	42	57	99
	%	42.4%	57.6%	100.0%

구체적으로 지역자원 연계 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도 평균 5.72개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지역자원 연계 사업들이 캠페인, 축제 등 일회성 행사수준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는 사업내용의 선정과 확대에 있어서도 가능한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전략적 추진이 요구된다.

표 III-61 지역자원 연계 사업 추진 실적 현황

	N	합계	평균
지역연계 공동사업 수	58	332	5.72

등록관청별 청소년단체의 지역자원 연계 사업추진 실적은 <표 III-62>에서와 같이 중앙정부 등록 단체의 경우 평균 5.92개이고, 지방정부 등록단체는 그보다 더 낮은 2.76개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관청에 상관없이 청소년단체 활동은 전반적으로 모두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2 등록관청별 지역자원 연계 사업 추진 실적 현황

등록관청	평균	N	합계
중앙정부	5.92	24	142
지방정부	2.76	29	80
합계	4.19	53	222

다섯째는 청소년단체 홍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전략으로써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의 홍보 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를 보면 <표 III-63>과 같다. 청소년단체는 주요 홍보 수단으로 인쇄물과 사이버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수막과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가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기 보다는 팜플렛이나 포스터 등 인쇄물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한 사업중심의 홍보전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청소년분야전반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대중적 파급효과가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전략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에 청소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이 요구된다.

표 III-63 청소년단체 홍보방법에 대한 다중응답(2개선택)

구 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대중매체	32	11.9%	24.2%
사이버 공간	75	27.9%	56.8%
인쇄물	103	38.3%	78.0%
현수막 등	39	14.5%	29.5%
기타 홍보수단	20	7.4%	15.2%
	269	100.0%	203.8%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형태별로 홍보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결과를 보면 법인의 형태에 상관없이 인쇄물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홍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현수막과 대중매체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재단법인의 경우는 현수막을 차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단법인은 어느 정도 대중매체 등 파급력이 높은 홍보수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4 법인형태별 홍보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대중매체	사이버 공간	인쇄물	현수막 등	기타 홍보수단	합 계
사단법인	총계	25	48	68	26	15	90
	%	89.3%	77.4%	80.0%	78.8%	93.8%	
재단법인	총계	3	14	17	7	1	20
	%	10.7%	22.6%	20.0%	21.2%	6.3%	
합계	총계	28	62	85	33	16	110

여섯째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이다. 이는 청소년분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III-65>에서 제시된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 여부를 보면 현재 가입이 되었거나 가입예정인 청소년단체는 58.2%인 반면에 미가입된 단체도 41.7%나 된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하나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로써 이는 개별청소년단체의 활동이 많지 않거나 소규모 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단체와의 관계 형성을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역량이 충분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청소년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더라도 장래 청소년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연수나 교육 또는 협력을 위한 사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소년 전반의 발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5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입	70	46.1	55.1
가입예정	4	2.6	3.1
미가입	53	34.9	41.7
합계	127	83.6	100.0

세부적으로 법인형태별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를 보면 사단법인이 재단법인 보다 미가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단법인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주로 회원과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타단체와의 관계형성 문제는 자체 역량의 부족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도 이를 추진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경우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추진에 중심을 둬으로써 협력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66 법인형태별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단체로의 가입여부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가입	빈도	48	13	61
	%	78.7%	21.3%	100.0%
가입예정	빈도	3	0	3
	%	100.0%	0.0%	100.0%
미가입	빈도	34	7	41
	%	82.9%	17.1%	100.0%

또한 지역내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것으로 <표 III-67>의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기관의 결과를 보면 있다는 단체가 64%이고, 없다가 36%이다. 이는 청소년단체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는 비영리조직으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36%정도가 지역내에 대외활동 협력기관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단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 단체나 외부활동이 필요 없는 활동인 교육 및 장학활동이나 종교활동 등 정관상의 기본활동만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67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음	45	29.6	36.0
있음	80	52.6	64.0
합계	125	82.2	100.0

세부적으로 등록관청에 따른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 정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보다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관청에 상관없이 지역내 대외활동이 없는 단체의 비율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표 III-68 등록관청별 지역내 대외활동 협력기관

구 분		등록관청등록처		전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없음	빈도	19	22	41
	%	46.3%	53.7%	100.0%
있음	빈도	27	45	72
	%	37.5%	62.5%	100.0%
전체	빈도	46	67	113
	%	40.7%	59.3%	100.0%

실질적으로 청소년단체가 지역내 협력기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면 1개 단체별로 평균 14.8개의 지역의 협력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표 III-69 지역내 협력 기관 수

	N	합계	평균
지역내 협력기관수	79	1166	14.76

등록관청별 지역내 협력 기관 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등록단체 평균 11.4개, 지방정부 등록단체 평균 5.49개로 중앙정부 단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지역내 협력기관의 유무에서 중앙정부가 비록 높게 나타났지만 협력을 하는 단체의 경우는 <표 III-70>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등록단체 중 지역협력을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70 **등록관청별 지역내 협력기관 수**

등록관청등록처	평균	N	합계
중앙정부	11.42	26	297
지방정부	5.49	45	247
합계	7.66	71	544

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 현황

어떤 조직에서나 대표자 역할은 그 조직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는 비영리조직인 청소년단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는 몇 개의 큰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소년단체의 설립이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개인이 설립한 소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영향력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특성은 청소년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변수가 된다.

첫째,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표 III-71>에서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74.5%, 여자가 25.5%로 청소년단체의 대표자는 남자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남자 73.2%, 여자 26.8%이고, 재단법인은 남자가 80.9%, 여자가 19.1%이다.

표 III-71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성별 분포

구 분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남	빈도	74	17	91
	%	81.3%	18.7%	100.0%
여	빈도	27	4	31
	%	87.1%	12.9%	100.0%

둘째는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교육정도는 96.7%가 대(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대표자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72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교육정도 분포

구 분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고졸이하	빈도	4	0	4
	%	100.0%	0.0%	100.0%
대(전문대)졸업	빈도	34	5	39
	%	87.2%	12.8%	100.0%
대학원이상	빈도	61	16	77
	%	79.2%	20.8%	100.0%

셋째는 청소년단체 대표자가 외부영입 대표일 경우 외부에서의 직업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종교인이 가장 높고, 기타 및 전문직 종사자 그다음으로 기업인과 비영리시설 운영자로 나타났다.

표 III-73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외부 직업

구 분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인	빈도	10	4	14
	%	71.4%	28.6%	100.0%
정치인	빈도	4	0	4
	%	100.0%	0.0%	100.0%
기업인	빈도	7	1	8
	%	87.5%	12.5%	100.0%
전문직종사자	빈도	9	1	10
	%	90.0%	10.0%	100.0%
자영업자	빈도	4	2	6
	%	66.7%	33.3%	100.0%
비영리시설운영자	빈도	8	0	8
	%	100.0%	0.0%	100.0%
기타	빈도	9	1	10
	%	90.0%	10.0%	100.0%

넷째는 대표자의 경제력은 중간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층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력이 하층도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경제력

구 분		법인형태		전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	빈도	24	8	32
	%	75.0%	25.0%	100.0%
중	빈도	57	8	65
	%	87.7%	12.3%	100.0%
하	빈도	14	2	16
	%	87.5%	12.5%	100.0%

다섯째는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과 연령, 그리고 소속단체에서의 경력을 등록관청별로 보면<표 III-75>에서와 같다. 중앙정부 등록단체 대표자의 경우는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이 평균 19.4년, 연령은 59.5세, 소속단체에서의 경력은 13.8년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등록단체 대표자는 청소년활동 경력이 15년, 연령은 52세, 소속단체 경력이 10.5년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등록단체의 대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연령·소속단체 경력

등록관청		청소년분야 활동경력	연령	소속단체 경력
중앙정부	평균	19.40	59.47	13.82
	N	53	55	53
	합계	1028	3271	733
지방정부	평균	15.04	52.42	10.57
	N	75	77	74
	합계	1128	4036	782
합계	평균	16.85	55.36	11.93
	N	128	132	127
	합계	2156	7307	1515

6.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 분석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과 미래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 청소년단체가 지금까지 논의 된 정책적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 사항은 11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단체인증제 시행, 19세 이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후기청소년활동지원센터,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 제도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접근 권한 제도적인 제한, 교과부의 에듀팟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 대한 참여수당 제도 도입,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제 확대 시행,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청소년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가칭 '청소년프로그램 기획평가사' 전문자격 제도 도입 등이다.

첫째는 청소년단체 인증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최근 태안 해병대캠프활동

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요구하면서 촉진되었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단체활동 참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로서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모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행토록 요청하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청소년단체 자체의 신뢰성을 인증 받으라는 것이다. 즉, 교육부는 자신들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할 청소년단체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와 정부기관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이미 비영리단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청소년단체에 대해 또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 전반을 위축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실적으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절차 및 평가기관의 역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요구 결과는 <표Ⅲ-76>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단체가 60.2%이고, 반면에 필요 없다는 의견도 18.2%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단체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시행에 있어서 공신력과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76 청소년단체인증제 도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2	7.9	8.4
그렇지않다	14	9.2	9.8
보통이다	31	20.4	21.7
그렇다	59	38.8	41.3
매우그렇다	27	17.8	18.9
합계	143	94.1	100.0

둘째는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의견이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으로부터 소외된 19세 이상의 대학생 등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표 Ⅲ-77>과

같이 나타났다.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의 51.1%로 이중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13.5%이다. 반면에 19.9%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센터에 대해 청소년단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다양한 후기 청소년의 활동 영역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표 III-77 후기청소년활동센터 설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8	5.3	5.7
그렇지않다	20	13.2	14.2
보통이다	41	27.0	29.1
그렇다	53	34.9	37.6
매우그렇다	19	12.5	13.5
합계	141	92.8	100.0

셋째는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단체들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활동을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단체는 61.7%가 필요하다는 반면에 12.7%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8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4	2.6	2.8
그렇지않다	14	9.2	9.9
보통이다	36	23.7	25.5
그렇다	61	40.1	43.3
매우그렇다	26	17.1	18.4
합계	141	92.8	100.0

넷째는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73.3%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필요성과 그 역할 확대부분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중심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지원할 필요가 높다. 또한 청소년단체관련 업무 중 협력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7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4	2.6	2.8
그렇지않다	8	5.3	5.6
보통이다	26	17.1	18.3
그렇다	65	42.8	45.8
매우그렇다	39	25.7	27.5
합계	142	93.4	100.0

다섯째는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배타적인 운영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57.4%가 긍정적인 반면에 16.8%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단체외에도 수 많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이 청소년단체가 아닌 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단체가 시행한다는 관념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어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 III-80>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단체들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타단체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질적 우위를 갖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0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배타적 운영 권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1	7.2	7.7
그렇지않다	13	8.6	9.1
보통이다	37	24.3	25.9
그렇다	46	30.3	32.2
매우그렇다	36	23.7	25.2
합계	143	94.1	100.0

여섯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사업을 공모하거나 위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단체 또는 일정자격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표 III-81>과 같이 70.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은 1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국가 및 지자체가 현재 공모 또는 위탁사업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청소년단체가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사업 공모나 위탁에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 기준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를 우선 선정토록 되어있다. 다만 청소년단체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을 가진 단체를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시에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후에 전문인력을 확보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측면과 더불어 추후에 선정되는 청소년 전문인력 확보가 임시적이거나 자격을 가진 이벤트업체와 사업기간동안 계약에 의해 운행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후자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청소년활동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예를들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알콜중독예방사업, 금연관련사업, 정신건강 관련사업 등 청소년보호사업이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보호사업 등이 있다. 반면에 청소년 단체들은 대부분 청소년활동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전문분야별 청소년단체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전자 즉,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단체를 고려할 때 부담금등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사업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정의할 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수익적 측면에서 부담금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1 정부사업 청소년단체 및 전문가만 접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9	5.9	6.3
그렇지않다	14	9.2	9.9
보통이다	19	12.5	13.4
그렇다	63	41.4	44.4
매우그렇다	37	24.3	26.1
합계	142	93.4	100.0

일곱째는 현재 학교내에서의 단체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의 에듀팍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57.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8.5%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청소년단체 중에서 학교내에서 직접적인 단체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체와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단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단체를 학교현장에서 직접 활용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는 단순히 에듀팍 인정 범위를 확대부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 청소년단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논리적인 접근, 또는 현재의 비교과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수행의 파트너로 청소년단체 인정 등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학교현장에 청소년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에듀팍 인정 범위 확대는 함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82 학교 에듀팍 인정 청소년 단체 활동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4	2.6	2.8
그렇지않다	8	5.3	5.7
보통이다	48	31.6	34.0
그렇다	52	34.2	36.9
매우그렇다	29	19.1	20.6
합계	141	92.8	100.0

여덟째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수당 제도 도입’과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응답으로 <표 III-83>과 <표 III-84>와 같다.

참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58.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14.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승진가산점 제도 확대에서는 69.3%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9.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제는 먼저 학교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승진의 필요성을 느끼는 교사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학부모의 반발이 높으며, 단체활동 비용은 100%로 수익자 부담이다. 또한 단체활동 담당교사는 참여 학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부가적인 행정 활동 중 청소년단체 활동도 하나의 부가업무로 취급되고 있다.¹⁾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참여수당제도와 승진가산점 제도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청소년단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또한 참여수당 제도의 경우 현재 자발적으로

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306>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의 자긍심 문제와 더불어 수당을 부담해야할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반면에 승진가산점제도는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 4년차를 기준으로 0.64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1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기준을 2년차로 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의 연수시간 60시간 연수와 100시간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30시간 연수와 50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3 교사 단체활동 참여수당 제도 도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4	2.6	2.8
그렇지않다	17	11.2	11.9
보통이다	39	25.7	27.3
그렇다	52	34.2	36.4
매우그렇다	31	20.4	21.7
합계	143	94.1	100.0

표 III-84 교사 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5	3.3	3.5
그렇지않다	8	5.3	5.6
보통이다	31	20.4	21.7
그렇다	54	35.5	37.8
매우그렇다	45	29.6	31.5
합계	143	94.1	100.0

아휴제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72.1%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9.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는 대부분 청소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학교가 인정하고 교사가 참여하는 청소년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안전공제회 설립시 비용을 부담할 기관으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등 참여기관의 범위를 설정해야한다. 또한 필요시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통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포함여부를 결정해야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 후에야 추가적으로 구성원들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I-85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운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5	3.3	3.5
그렇지않다	8	5.3	5.6
보통이다	27	17.8	18.9
그렇다	64	42.1	44.8
매우그렇다	39	25.7	27.3
합계	143	94.1	100.0

열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사’와 같은 새로운 전문자격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5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19.7%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6>.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들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1/5정도 나온 것은 필수적인 자격이라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갖는 한계점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격의 조건, 업무영역, 역할수행, 현장 요구 등을 포괄함으로써 효용성이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역량 강화는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 연수를 통하여 보완할 여지도 있다. 반면에 추가자격증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사에 대한 업무영역을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나 청소년활동 안전 검토 등 현재의 청소년지도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효과성과 차별성을 높일 수가 있다.

표 III-86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사 자격 제도 도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8	5.3	5.6
그렇지않다	20	13.2	14.1
보통이다	38	25.0	26.8
그렇다	64	42.1	45.1
매우그렇다	12	7.9	8.5
합계	142	93.4	100.0

제 4 장

청소년단체 발전 방안

1. 문제점
2.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 4 장 청소년단체 발전 방안

1. 문제점

청소년단체에 대한 현황분석결과에서 첫째, 기초현황을 보면 조직구조, 운영현황, 재원구조 등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보다 사단법인이 더 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자산구조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익구조가 회원과 후원금 등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활동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높다.

이 결과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수익창출에 몰두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청소년활동모금회나 청소년활동사업 중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정관내용이나 청소년활동사업 측면에서도 볼 때, 청소년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주류활동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이나 보호활동, 복지활동보다는 개별단체만의 자체활동으로 볼 수 있는 기타 청소년활동이나 학교 장학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국가청소년정책과 청소년단체 활동 간에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운영방식과 의사결정을 보면 소속단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속단체와 폭넓은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는 운영현황에서 청소년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전부위탁 또는 일부위탁이 37.2%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청소년단체의 역량이나 사업의 성격상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시설위탁 부분에서는 외부위탁 가능부분

과 반드시 자신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평가 기준으로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조직구성원의 현황분석 결과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9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청소년활동사업 추진에서 안전과 관련되고,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청소년단체의 수익구조 개선 없이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시 위탁법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청소년단체 운영에의 청소년 참여문제는 현재 청소년시설 위탁 등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법인인 청소년단체에는 이러한 조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소년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경영에의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청소년단체 법인의 설립이나 이사회 구성 등에 청소년참여 의무화를 제도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 데 있어서 지방등록 단체가 지도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도자 1인당 부담해야 할 청소년참가자 수가 많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젊은 연령층의 지방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등록 단체의 경우 청소년 전문지도 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의 위탁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고 이를 위탁법인의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곱째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시 보험미가입 활동이 20%가 된다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두가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급한 조치로는 모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토록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한다. 장기적 조치로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청소년단체 및 시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덟째는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단체 중 재단법인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는 미흡한 반면에 장학활동이나 수익창출활동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시설위탁 등이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단법인 갖는 한계점일 수도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연수나 토론회를 통한 교육이나,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 시행에 학교 연계 등을 포함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아홉째는 청소년단체의 홍보활동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체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홍보와 전통적인 팜플렛 등과 같은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대중의 파급력이 높은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청소년단체의 홍보활동이 단순히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보다는 지역사회에 청소년활동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우호적 역량을 함양시키고 지자체의 청소년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자원인 신문과 방송을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단체가 지역내 협력활동이 없다는 결과가 30% 수준이나 되는 것은 청소년단체가 개방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자기만족 등 소극적인 운영체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보육, 육아 등의 단체가 적극적이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지원과 국가 자원을 획득한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초보적이고 미흡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들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국가와 지방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는 청소년단체인증제 시행, 19세이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후기청소년활동지원센터,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 제도화, 청소년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접근 기준의 강화, 교과부의 에듀팟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 대한 참여수당 제도 도입,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제 확대 시행,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청소년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가칭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사' 전문가격

제도 도입 등이다.

과제1. 청소년단체 인증제 도입

청소년단체인증제는 최근 태안 해병대캠프활동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인증 청소년단체를 요구하면서 촉진되었다. 즉, 교육부 입장에서 어떤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단체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적절한 법적 요건과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인증을 하는 것은 적합한가? 또한 이러한 인정제도가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진입장벽이나 폐쇄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태안의 해병대사건 등 각종 청소년활동 관련사건 사고 이후에 안전한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청소년활동역량 평가를 인정받는 것이 전반적인 청소년단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같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초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단체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그 업무를 위탁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청소년단체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청소년단체 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시행주체와 인증제도 발급 주체, 그리고 인증기간, 그리고 인증제의 지표가 대외적으로 단체 신뢰성의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ISO 비영리단체 관련 코드 인증으로 표준 업무를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과제2. 후기청소년활동센터 설치·운영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24세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분야에서는 19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이나 논의가 거의 없으며,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관한 학문적인 자료도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도 대학생, 대안학교 청소년, 대학 중도탈락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실직 청소년 등 다양한 범위의 청소년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불분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을 명확히 해야만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세 이상의 청소년의 활동영역이 대학생에서 군대, 연애와 결혼, 아르바이트, 직업, 사회참여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이라고 볼 때,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활동으로는 대학교의 학생생활상담실, 고용부의 취업지원센터 또는 경력개발센터 등이 있으며, 단체 활동으로는 대학동아리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을 청소년활동부분으로 한정해 본다면 대부분의 대학생 활동이 중고생에 대한 멘토, 사회적 자원봉사, 또는 준청소년지도자 활동 등으로 보아지며, 이는 순수한 의미의 청소년활동 참여로는 접근하기 힘들다.

따라서 19세 이상 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경력이나 스펙지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비진학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개발이나 근로지원 등이 포함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논의를 통해 볼 때 후기청소년활동센터의 설치는 기초적인 학문연구와 개념적 대상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축적 등을 통해 센터 설립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야하며, 그전단계로 경력개발분야나 자원봉사분야, 해외교류 분야, 근로청소년분야에 대해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3. 지역청소년단체 협의회 설치·운영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단위의 연합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미흡한 반면에 지역고유의 단체는 지역협의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청소년단체내에서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정보교류와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몇몇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단체가 협의회를 형성할 만큼 많지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청소년분야의 유사한 지역협의회인 청소년시설협의회의 경우 서울의 '서울청소년시설연합회' 등이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의 최소한 광역시·도 단위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단체간의 자생력과 독자적인 성장형태를 볼 때 협력의 필요성이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을 단순히 정보교류나 친목도모 차원을 넘어서 일정수준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한다.

다만 이 논의는 현재 전국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강화측면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과제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할 강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생성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청소년기본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청소년단체의 비약적인 발달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도 가장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후 청소년정책이 단체중심 정책에서 시설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고, 청소년활동 정책의 집행이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청소년

년단체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축소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이라는 측면과 한국청소년단체협회가 가진 자원을 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본원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73개 회원단체를 가진 협의체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현황과 문제가 자체 청소년 사업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아진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본질을 되살리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청소년단체를 대표해서 개별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것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청소년단체인증제' 등 청소년단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생적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적으로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산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부족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인력을 대체하여 수행업무 중 일부를 회원단체 내에 전문분과나 정책분과를 구성 운영토록하여 그들의 의견을 모으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한국청소년단체협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하 NCS)화 작업에서 청소년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토록 되었지만 현재 현장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논의할 때 제외될 여지가 높게 되어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가 전체 사회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와 의 직무표준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회가 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청소년지도자연협회 또는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보호기관, 청소년학회 등을 포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현장을 대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NCS는 순수하게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은 대표가 될 수 없는 반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회원단체들이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수행에서도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5.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용어의 배타적 운영권한 도입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사용 용어에 대한 배타적 운영 권한이란 청소년단체이외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에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태안의 해병대 캠프사고나 국토순례대장정 프로그램 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학교나 학부모등이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청소년단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1,000개이상의 청소년단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성이 의문시 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단체만이 차별적 독점을 가짐으로써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현재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증제를 보다 확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단체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만한 명칭을 특허 등록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과제6.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전문가 보유기관에 한하여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접근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전문가를 가진 기관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청소년활동분야 뿐만 아니라 보호, 복지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청소년단체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는 위탁사업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단체를 우선선정토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가 아닐 경우 추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청소년전문가를 채용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든 국가 및 지자체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청소년전문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평가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종류와 역량문제에서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은 과거의 청소년활동 분야를 포함하여 알콜중독예방사업, 금연관련사업, 게임중독사업, 정신건강 관련사업 등 청소년보호나 복지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단체들은 대부분 청소년활동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고, 청소년보호 및 복지단체는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단체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이를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시설의 위탁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단체를 고려할 때 부담금등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과제7. 학교내 에듀팟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 확대

학교내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당 최소 1개 단체에서 45개의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16개 단체 활동에 대해서만 에듀팟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듀팟 인정이 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도 연간 100시간이상 청소년단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만 학교 에듀팟으로 인정 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나 경력관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에듀팟 인정 권한이 학교에 있으며, 학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단체의 측면보다는 학교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이는 곧 과제1의 청소년단체인증제와 일정부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청소년단체 인증 제도를 통해 증명된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동시에 인정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통해 청소년단체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시에는 이에 대한 에듀팟 인정도 일정부

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과제8. 교사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수당제도 도입 및 승진가산점 제도 확대 시행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의 참여수당 제도 도입 및 승진가산점 제도의 확대는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기피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사는 원하지 않는 제도일 수가 있으며, 또한 현재 단체 활동 담당교사가 갖는 단체 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무한 책임과 청소년단체 활동이 단순히 학교의 또 다른 부가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참여수당제도나 승진가산점제도 도입만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도서벽지근무 및 읍면동지역 특별 지정한 학교,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5항)' 선택가산점제 조항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의 경우도 추가로 삽입하여 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의 법제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활동 참여도에 따라 여성가족부 혹은 교육부 관계자 표창제도를 만들거나 외부 청소년활동 참가시 본인 부담이 들지 않게 출장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시 인증서를 부여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둘째는 학교에서 가장부담을 가지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프로그램 인증제에 따른 인증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단체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된 청소년단체 활동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유효·적절하게 대처한 교원의 책임 면책(특례법) 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승진가산점제도의 운영에서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 4년차를 기준으로 0.64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1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기준을 2년차로 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의 연수시간 60시간 연수와 100시간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30시간 연수와 50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과제9.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소비자인 청소년이 중심대상이라기 보다는 교원복지를 위한 교원공제회나 군인복지를 위한 군인공제회등과 같이 청소년단체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는 청소년안전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민간의 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교의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 활동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군소단체 등에서 그동안 소홀히해왔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청소년 안전 문제는 국가입장에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기본적 권리의 문제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칭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칭한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첫째는 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측면에서는 보험가입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소년단체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청소년단체 활동 보험가입의무조항을 비롯한 공제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제회의 추진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현재 유사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안전중앙공제회’나 최근에 설립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제회’나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공제회’의 사례검토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 투자분담, 보장범위 등 공제회 설치와 연계된 정부나 청소년단체, 그리고 청소년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세부적인

논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는 공제회의 실질적인 부담과 혜택을 가져야하는 현장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단체, 일선 지도자, 일반 청소년지도사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반 단체, 시설들에게 취지와 이유, 목적, 방향, 현재 다른 직능 및 기타 사회부문 운영사례 등을 정리해서 알리고 취합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10. 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 제도 도입

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이하 기획·평가사라 한다)란 현장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 평가·진단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전문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국가 자격제도로 청소년지도사가 존재하고 이들을 배치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준수하는 단체나 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칭 ‘청소년프로그램기획평가사’ 제도가 현장에서의 수요가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자격증의 가치가 현장에서 외면되어 효용성이 없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가청소년지도사 자격증제도와 차별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우는 학문적 영역과 기획·평가사가 배우는 학문적 영역이 충분히 다른가 하는 것과 현재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임을 볼 때 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인증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인증제의 경우 현장의 프로그램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직접적인 평가·진단을 통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자 자격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는 자격증의 수준이다. 이는 '평가사'를 국가자격증으로 할지, 순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차원의 민간 자격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격제도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임성택, 김영한, 장동현(2000).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방은령, 윤옥경(2005). 청소년보호 시설·단체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맹영임, 이광호, 김민(2003). 청소년단체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송병국(1999). 청소년단체 활동, 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총론. 양서원.
- 황규대 외(2001). 조직행동의 이해:통합적 접근. 박영사.
- 임용수(2000). 청소년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2012). 2012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9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활동 30년.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 록

1. 설문지

부 록

1. 설문지

[문항 1] 다음은 귀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	
FAX :	
E-mail :	
4. 주무관청(등록관청) :	
설립일: 년 월 일	
5. 법인형태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6. 단체구성원	①청소년회원(명) ②성인회원(명) ③자원봉사자수(명)
7. 자산규모	①고정자산(부동산): 백만원
	②유동자산(동산): 백만원
	③부채: 백만원
8. 정관상인 설립목적 (해당분야 모두선택)	①종교활동() ②수련활동() ③보호활동()
	④복지활동() ⑤교육 또는 장학활동() ⑥기타 청소년활동()
9. 핵심 청소년 사업 (2개선택)	①수련활동사업() ②보호활동사업() ③복지활동사업()
	④교육 및 장학활동사업() ⑤자원봉사활동() ⑥기타 청소년관련활동()
10. 핵심 사업 주체	①종교단체() ②오너(대표자)() ③정부 및 지자체()
	④소속법인() ⑤회원() ⑥기타()
11. 단체 운영 방식	①협의체를 통한 운영() ②전문운영자에 의한 운영() ③대표자직영()
	④소속법인이 직접 운영() ⑤기타()

[문항 2] 다음은 귀 청소년단체의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사업 주요 운영방식 (모두선택)	①위탁운영() ②직접운영() ③직접및위탁운영병행() ④다양한기관및단체연합운영() ⑤기타()
2. 직원현황	①총직원수(명) ②정규직원수(명) ③비정규직원수(명)
3. 외부참여현황	①이사진수(명) ②자문위원수(명) ③교직원참여수(명)
4. 청소년 경영 참여현황	청소년위원회 구성여부 - ①있다() ②없다()
5. 위탁시설 운영	①청소년시설 위탁(개소) ②기타시설 위탁(개소) ③없음()
6. 정규직 평균 연봉 (2012년 말 기준)	①최하직원(백만원) ②간부직원(백만원) ③임원(백만원)
7.재원조달방법 (높은 순으로 2개 선택)	①법인전입금() ②회원 회비() ③후원금() ④오너지원() ⑤수익(임대포함)사업 수입()
8. 연간수입현황 (2012년말 기 준)	①법인전입금(백만원) ②회비(백만원) ③후원(백만원) ④임대수입(백만원) ⑤국고및지방비(백만원) ⑥사업수익(백만원) ⑦사업외수입(백만원) ⑧총수입(백만원) ⑨수입없음()
9. 연가지출현황 (2012년말 기 준)	①인건비(백만원) ②사업비(백만원) ③관리비(백 만원) ④기타비용(백만원) ⑤총지출(백만원) ⑥지출없음()
10. 경영감사 (모두선택)	①외부감사() ②자체감사() ③미실시()
11. 경영공개 (모두선택)	①외부공개() ②자체공개() ③비공개()

[문항 3] 다음은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을 기준으로 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운영한 프로그램만을 작성해 주십시오)

1. 운영프로그램 수	①청소년대상(개) ②어린이및유아대상(개) ③성인대상(개) ④기타(개)
2.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①청소년(명) ②어린이및유아(명) ③성인(명)
3. 숙박 및 이동형 프로그램수	①프로그램수(개) ②참가인원(명) ③참가지도자(명)
4. 프로그램 참가 모집 범위	①전국() ②광역시·도() ③소속지자체() ④2개이상지자체()
5. 보험가입	①가입() ②미가입()
6.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①없음() ②있음 - 지원프로그램수(개), 지원금액(천 원) 지원관청()
7. 프로그램 운영방법	①100%자체운영() ②일부외부위탁운영() ③100%외부위탁운영()
8. 단체활동시 지도자 운용 방법	①100%자체직원() ②외부지도자임시채용() ③아르바이트대학생활용() ④자원봉사자활용() ⑤기타전문사업단체계약활용()

[문항 4] 다음은 귀 단체의 협력 활동 및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p>1. 학교 창의적체험 활동 연계 사업 운영</p>	<p>①창체 운영프로그램수(개) ②창체 연계학교수(개교)</p> <p>※ 창의적체험활동이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p>
<p>2. 단체활동 학교 연계 현황</p>	<p>①단체활동 연계학교 수(개교) ②단체활동 참여교사(명)</p>
<p>3. 학교인정 단체 활동 (에듀팟 인정)</p>	<p>①인정된활동(개) ②미인정활동(개) ③학교내단체활동없음</p> <p>※ 에듀팟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의 4가지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방과후학교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과 외 활동에 학생이 성실히 참여한 과정과 결과를 담은 그릇임</p>
<p>4. 학교인 지역 자원 연계 사업 활동</p>	<p>①없음() ②있음-지역연계공동사업추진실적(건)</p>
<p>5. 주요 홍보수단 (2개 선택)</p>	<p>①대중매체() ②사이버공간(휴대전화포함)() ③인쇄물(팸플렛,리플렛 등)() ④현수막등() ⑤기타()</p>
<p>6. 상위 또는 다른 단체인 회원단체로인 가입 여부</p>	<p>①가입-(개) ②가입예정() ③미가입()</p>
<p>7. 지역내 대인 활동 협력기관 (지역협의회 등)</p>	<p>①없음() ②있음-지역내협력기관수(개)</p>

[문 5] 다음은 귀 단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남() ②여()
2. 교육정도	①고졸이하() ②대(전문대)졸업() ③대학원이상()
3. 청소년분야 활동경력	(년)
4. 연령	(세)
5. 외부영입 대표일 경우 직업(신분)	①종교인() ②정치인() ③기업인() ④전문직 종사자() ⑤자영업자() ⑥비영리시설운영자() ⑦기타()
6. 소속단체 경력	(년)
7. 경제력	①상() ②중() ③하() ※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력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

[문 6] 다음은 귀 단체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을 작성 또는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일어난 청소년활동 관련 각종 사건사고는 청소년단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인증제' 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못하고 있는 대학생등 후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기 청소년활동센터' 와 같은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단체간 정보교류나 단체간의 협력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청소년이 참여하는 학교외 활동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캠프' '청소년해병대캠프' 등이 있으나, 국민의 인식은 모두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용어 또는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단체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운영 권한을 제도적으로 등록(특허 등)'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 및 지자체에서 청소년사업(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공모함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또는 일정자격이상의 전문기를 보유한 비영리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내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에듀팍 인정 청소년단체 활동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단체활동 참여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사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안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운영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 평가 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성 '청소년프로그램기획평가사' 안 같은 전문자격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제안사항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진 ◆

청소년연맹	허 정 부장
해양소년단	류택선 팀장
홍사단	조환용 부장
걸스카우트	육혜란 부장
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준하 주임
경기대학교	송민경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이채식 교수

연구보고(수시과제)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